

#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 제도 비교 연구

- 미국의 SRO와 영국의 SSP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 제도 비교 연구

- 미국의 SRO와 영국의 SSP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유 지 응

# 목 차

<b>I. 서론</b> .....	<b>1</b>
1. 문제의식 .....	1
2. 연구 목적 및 연구의의 .....	2
3. 선행연구 검토 .....	3
<b>II. 미국과 영국의 학교 경찰관 프로그램</b> .....	<b>4</b>
1.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SROs) 프로그램 .....	4
2. 영국의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 .....	5
<b>III. 미국과 영국 학교경찰관의 활동 형태</b> .....	<b>8</b>
1. 미국 학교담당경찰관(SROs)의 활동 형태 .....	8
가. 미국 내 학교담당경찰관 수적 규모 .....	8
나. 학교담당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 수 .....	9
다. 학교담당경찰관 대상 훈련 .....	10
2.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활동 형태 .....	11
가.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수적 규모 .....	11
나.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인적 구성 .....	12
다. 학교안전경찰관 활동 근거지 .....	13
라. 학교와의 연결 형태 .....	14
마. 협력 대상 학교 수와 유형 .....	15
바. 학교안전경찰관 근무 시간 .....	16

사. 훈련 .....	16
아. 재정지원 .....	16
자. 지휘 체계 .....	17
<b>IV. 미국과 영국 학교 경찰관의 역할 .....</b>	<b>18</b>
1. 미국 학교담당경찰관(SROs)의 역할과 임무 .....	18
가. 안전 전문가, 법 집행자 .....	18
나. 문제상황 해결자, 지역사회 자원 연계자 .....	19
다. 교육자 .....	19
2.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역할과 활동사례 .....	22
가.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역할 .....	22
나.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사례 .....	24
<b>V.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b>	<b>28</b>
1. 미국 학교담당경찰관(SROs) 프로그램 .....	28
2. 영국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 .....	31
<b>VI. 맺는 말 .....</b>	<b>35</b>
<b>참고문헌 .....</b>	<b>39</b>

## I. 서론

### 1. 문제의식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들이 동급생들로부터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온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관련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13년에 들어서는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학교폭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의 기본적 인식은 더 이상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그 해결책도 학교에서 교사들의 훈육뿐만 아니라 경찰,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 단체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경찰이 서로 연계·협력하는 학교-경찰 연계 제도, 곧 학교 경찰관 프로그램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와 경찰이 서로 연계 협력하여 학교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시도된 지 5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학교에 전일 근무 경찰관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도 20

년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관련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종합근절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각 경찰서별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정되어 관할 지역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범죄예방교육, 상담, 중재, 순찰활동 등을 감당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이뤄진 서울교육청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채 2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경찰의 협력활동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그 본래의 도입 취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학교경찰관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학교경찰관제도 운영 경험은 우리나라에서의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목적 및 연구의의

이 연구는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경찰관의 활동 형태, 역할과 임무 등을 비교하고, 미국과 영국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교-경찰 연계프로그램으로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

입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점차적인 운영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국외적으로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영국의 학교 경찰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와 비교하고 있는 첫 연구라는 점에서도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3. 선행연구 검토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1990년대 후반에 박세정(1998)의 연구가 이뤄진 바 있고, 최근에는 최종술의 연구(2012)와 유지웅의 연구(2013a)가 이뤄졌다.<sup>1)</sup> 박세정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에 이뤄진 최종술의 연구는 박세정의 연구의 기초 위에서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학교경찰관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것이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과 한국적 학교경찰제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유지웅의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와 최근 미국사회 전반의 학교경찰관 제도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미국사회 전반의 학교경찰관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들을 통해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와 비교를 통해서 영국의 학교 경찰관 제도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연구로서 연구 의의를 갖는다.

1) 박세정,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서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1998;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2012; 유지웅, “미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과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방향”, 4대 사회악 연구자료집 2, 치안정책연구소, 2013a.

## II. 미국과 영국의 학교 경찰관 프로그램

### 1.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SROs) 프로그램

미국에서 학교경찰의 역사는 거의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2)</sup> 지난 시기 동안 여러 형태의 학교경찰 제도가 지역별로 운영되어 왔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일반화된 학교 경찰 프로그램은 School Resource Officers(SROs) 프로그램이다.<sup>3)</sup>

미국에서 학교경찰관을 School Resource Officers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에서 범죄행위와 관련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도 학교 안전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주고<sup>4)</sup>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미국사회에서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가 크게 확대된 계기가 된

2) 미국에서 School Resource Officers(SROs)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도 경찰이 학교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Burke(2001)와 Girouard(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인디애나폴리스 공립 학교경찰의 역사는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학교는 학교 경찰의 역할을 하는 “특별 조사관”을 10년 이상 고용하고 있었다. 1970년에 그 기관은 재조직되어 인디애나폴리스 공립학교경찰이 되었다. 다른 예로서, 로스앤젤레스 학교경찰국(Los Angeles School Police Department)은 원래 1948년에 경비부서(security section)로서 시작했다가 독립적인 경찰기관으로 변신한 것이다.

3) Briers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일반화된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는 1951년 영국 리버풀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미국에는 1958년에 도입되었다(A. N. Briers, School-based police officers: What can the UK learn from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5,2, 2003, 129-142).

4)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2012, 5면.

5)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School Resource Officers(SROs)를 학교담당경찰관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학교담당경찰관으로 칭한다.

것은 1990년대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몇 건의 총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미국사회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했다. 미국 정부는 학교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에 출입하는 학생들의 무기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금속탐지기를 설치한다거나,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무관용원칙을 시행하거나, 학교 순찰을 위해서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sup>6)</sup> 근래 미국에서는 학교폭력과 각종 위법행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학교안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학교경찰관을 확대 배치하는 추세이다.<sup>7)</sup>

## 2. 영국의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

영국정부는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을 막는 것을 정부의 우선적 과제로 삼아 왔다. 청소년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영국 정부의 정책적 실천들은 학교에 기반을 둔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 영국정부는 관련부처 합동대책으로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Safer School Partnership programme: SSP)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영국에서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학교 경찰 활동은 이뤄지고 있었다. ‘학교연계경찰관’(School Liaison Officers, SLOs)으로 지칭하는 학교경찰관 제도와 그밖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여러 학교경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왔다.

6) B. Brow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school police officer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m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006, p.592.

7) D. M. Herszenhorn, Students to get no warning before searches, *New York Times On-Line*, 2006, April 14.

‘학교안전협력’(SSP) 프로그램은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DCSF),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YJB), 경찰서장연합회(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OP)등의 기관에서 새로운 학교경찰 활동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공동 계획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학교와 경찰이 청소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와 범죄피해 두려움을 줄이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하나의 공식적 협정이다.

영국에서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SSP)을 도입한 것은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경찰이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은 우범지역 내에 소재한 백여 개의 학교에 학교 안전 경찰관(Safer School Police Officer)을 배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SSP)은 2002년 9월 시작되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이 저질렀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그 정도가 심한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들을 다루는 데 집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응집력 개선과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고양, 청소년들과 그 가족, 더 나아가 학교주변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면서, 2006년 3월 영국의 교육기술부는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학교경찰 활동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삼았다.<sup>9)</sup>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SSP)이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학교경찰 활동 프로그램이 되면서 학교와 경찰의 동반자 관계는 영국 정부 정책의

8) S. Bhabra, E. Hill and D. Gbate, *Safer School Partnerships: national evaluation of the Safer Schools Partnership Programme*, London: Youth Justice Board and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p.10.

9) J. Burgess, 'Safer schools partnerships', *Criminal Justice Monthly*, 63, 1, 2006, 24-39.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2008년에 영국 정부의 청소년범죄 사업계획에서는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이 근린지역 경찰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밝히고, 보다 많은 지역에서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 Ⅲ. 미국과 영국 학교경찰관의 활동 형태

#### 1. 미국 학교담당경찰관(SROs)의 활동 형태

##### 가. 미국 내 학교담당경찰관 수적 규모

미국에서는 근래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에 이뤄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체 공립 중고등학교의 54%가 학교안전요원(security guards)이나 학교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2005년에 이뤄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68%로 증가했다.<sup>10)</sup> 미국내 학교담당경찰관의 대표적 조직인 전국학교담당경찰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School Resource Officers)에서는 2008년에 당 협의회 소속된 학교담당경찰관 회원수는 9,000명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규모는 이 협의회에 소속된 학교담당경찰관 규모만 보여준 것으로서, 실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학교경찰관 규모에 비하면 극히 보수적인 추정치이다.<sup>11)</sup>

Brown(2006)은 미국 내에 20,000명 이상의 학교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한다.<sup>12)</sup> 그렇지만, 미국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학교 법집행

10) R. Dinkes, et al.,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Office of Justice Programs, and U.S. Department of Justice, 2007, p.61.

11) Kupchik and Bracy, To Protect, Serve, and Mentor?: Police Officers in Public Schools, T. Monahan, R. D. Torres (Edited), *Schools under Surveillance: Cultures of Control in Public Educa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p.23.

12) Brown, 앞의 글, p.592.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경찰관을 지칭하는 표준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파악한 숫자는 보수적인 추정치일 뿐이고 근래 들어서 학교담당경찰관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많은 수의 학교경찰관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 나. 학교담당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 수

미국에서 학교담당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수는 지역별로 다르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명 혹은 여러 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이 한 학교를 맡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이 둘 이상의 학교를 맡고 있기도 하다.<sup>14)</sup> 일반적으로 주요도시에서 학교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중도도시나 농촌지역에서 학교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미국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한 경향이 있는데, 학교폭력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학교경찰관의 수요는 높으며 학교경찰관제도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13) Raymond는 모든 공립학교의 거의 절반 가량이 학교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B. Raymond, Assigning Police Officers to Schools. Response Guide No. 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0).

14) Kupchik and Bracy, 앞의 글, p.23.

15) 그 예로서, 뉴욕시는 학교경찰관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속하는데, 뉴욕시에는 뉴욕시 경찰국 소속으로 학교안전부(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School Safety Division)가 있고, 약 5,000명의 학교안전요원과 200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시 경찰국 학교안전부 소속 학교경찰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학교수는 약 1,500개 정도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는 로스엔젤레스 학교경찰국(The Los Angeles School Police Department, LASPD)이 지역 학교에 학교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인적 구성은 340명의 경찰관과 147명의 학교안전요원으로 이뤄져 있다. 로스엔젤레스 학교경찰이 관할하는 지역의 학교와 시설수는 모두 1,030개이다. 미국에서 뉴욕과 로스엔젤레스는 학교경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속한다.

즉, 미국 내 학교담당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수는 지역마다 다르다. 각 지역마다 학교폭력의 상황이 다르고 지역사회의 학교경찰에 대한 수요도 차이가 있다.

## 다. 학교담당경찰관 대상 훈련

미국에서 학교경찰관으로 선발된 경찰관은 대부분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친다. 학교경찰관으로 선발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내용을 보면, 소년법 체계 전반, 강의기법, 수업관리, 대인관계기법, 범죄예방교육(마약, 자살방지, 폭력조직 가담 억제, 개인 신변보호, 안전 운전 등) 등을 포함한다. 교육방식은 선임경찰관을 통해 배우는 방식(OJT)과 직장 밖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는 방식이 병행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예방교육, 예컨대 마약, 자살방지, 폭력조직 가담 억제 등의 교육은 직장 외부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 학교담당경찰관(SROs)협의체인 전국학교담당경찰관협회(NASRO)이나 전국학교폭력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등이 학교경찰관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들이다.

뉴욕시 경찰국 학교안전부에는 정규 경찰관 외에 시공무원 신분의 학교안전요원이 학교경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sup>16)</sup> 이들은 뉴욕시 공립학교 내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확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애초 정규경찰관으로 선발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sup>17)</sup> 뉴욕 경찰국 내의 학교안전요원 교육 훈련단(the School Safety Training Unit)이라는 기구는 학교안전요원

16) 최종술, 앞의 글, 10면, 23면.

17) 학교안전요원은 채용과정에서도 의료, 심리, 체력, 성격 검사 등의 분야에서 소정의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을 교육하는 조직이다. 이곳에서는 신입 학교안전요원들이 학교안전부의 규정과 방침, 권한의 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14주 동안의 기본교육과정에는 행태과학, 경찰학, 법, 치안관의 권한, 육체적 훈련과 전술 그리고 심폐기능소생법, 응급처치 등의 교육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교육과정 외에도 3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sup>18)</sup>

## 2.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활동 형태<sup>19)</sup>

영국의 ‘학교 안전 경찰관’(Safer School Partnership Officer)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범죄나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바른 행동을 하고 학교에 무단결석하지 않으며, 경찰 및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영국의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에 기반을 두고 학교 직원들, 학생들,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일하는 경찰관이다. 영국의 학교 안전 경찰관이 활동하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가.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수적 규모

영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에 의하면, 영국에는 모두 450개 이상의 학교 안전 협력(Safer School Partnership) 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sup>20)</sup> 영국의 경찰서장연합회(ACPO)에서 조사한 통

18) 최종술, 앞의 글, 15면.

19) E. Lamont et al., Police Officers in School: A scoping study,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2011, pp.7-16.

계에 의하면,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5천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1)</sup> 이는 영국 전체 학교의 1/4에 해당한다.<sup>22)</sup> 또한 영국의 43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29개 경찰청에서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나.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인적 구성

‘학교 안전 협력(SSP)’ 팀에는 학교에 배치된 정규 경찰관 외에 PCSO(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up>23)</sup>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PCSO는 영국 43개 지방 경찰청과 교통경찰에 고용된 민간인 경찰직원인데, 제복을 착용하지만 경찰에게 부여된 공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파란색 배지를 착용하고 있어서 정규 경찰관과 구별된다.<sup>24)</sup>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에서 정규 경찰관과 PCSO를 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배치 형태는 초등학교에 PCSO를 배치하고 경찰관인 순경(Police Constable: PC)들은 중등학교에 배치하는 형태이다. PCSO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업무를 맡고 있고 지역적 이해를 갖고 있어서, 대개 초등학생 또래의 아동들을 다루는 데 주로 배치된다. PCSO와는 달리 경찰관은 다양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협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범죄행위를 처리

20) <http://www.justice.gov.uk/youth-justice/prevention/safer-school-partnerships>

21) 영국 런던 소재 자치구 1개의 학교 안전 협력 팀이 맡고 있는 학교 수 규모가 15개 학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 전체적으로 5,00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 ‘학교 안전 협력’(SSP) 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2)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104514/A-quarter-UK-schools-police-office-r-crackdown-youth-crime.html>(2013.12.10. 검색)

23) PCSO(A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는 PCSOs는 2002년 경찰개혁법안(Police Reform Act 2002)에 따라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4)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경우 현재 33,000명 이상의 경찰관과 4,700여명의 PCSO가 활동하고 있다.

해야 할 사안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찰력을 보유한 정규 경찰관이 주로 배치된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32개 자치구 가운데 브렌트 자치구 ‘학교 안전 협력’ 팀의 경우, 이 팀에는 7명의 경찰관과 2명의 PCSOs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안전 경찰관은 각각 적어도 2개의 학교에 연계되어 있고<sup>25)</sup>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자기에 할당된 중등학교에서 시간을 보낸다. 나머지 시간에는 수사나 행정 업무와 같은 경찰업무를 담당한다. PCSOs들도 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수사와 지역 순찰활동을 돕는다.<sup>26)</sup>

## 다. 학교안전경찰관 활동 근거지

영국의 학교 안전 경찰관은 대개 학교 내 사무실이나 시설들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한다.<sup>27)</sup>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경찰이 지역 내의 한 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학교 안전 경찰관은 그 학교를 근거지로 삼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중등학교나 초등학교를 방문한다. 덜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어느 한 학교에 근거지를 두지 않고 담당 학교를 순회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이 담당하는 각 학교에 사무실이나 이용시설을 두고 있다.

25) 브렌트 자치구 학교안전협력팀이 맡고 있는 지역 학교수는 모두 14개교이다.

26)

[http://content.met.police.uk/Article/Safer-Schools-Partnership/1300000261291/1300000261291?scope\\_id=1257246763584](http://content.met.police.uk/Article/Safer-Schools-Partnership/1300000261291/1300000261291?scope_id=1257246763584)

27) S. Bhabra et al., *Safer School Partnerships: national evaluation of the Safer Schools Partnership Programme*, London: Youth Justice Board and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 라. 학교와의 연결 형태

영국에서 학교 안전 경찰관과 PCSO가 학교와 연결되는 형태는 다양하다. 접촉 빈도, 동기, 학교와 경찰의 접촉 유형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학교 안전 경찰관과 PCSO가 공식적으로 특정한 한 학교나 한 그룹의 학교를 전담하여 활동하는 형태이다.

둘째, 학교 안전 경찰관과 PCSO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학교들을 맡고 있는 한 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형태이다.

셋째, 학교 안전 경찰관과 PCSO가 학교에 지정된 협력기관(named contact)으로서 활동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경찰이 학교에 모습을 나타내는 정도가 낮고 접촉 빈도도 낮다.

넷째, 학교 안전 경찰관과 PCSO가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찰활동의 일부로서 학교를 지원하거나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협력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근린지역 경찰활동 팀(NPT) 내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 중의 하나로서 요청이 있을 때에 학교를 지원한다.

다섯째, 학교 안전 경찰관이나 PCSO는 학교나 지역사회 안에서 특별한 요구(specific need)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와 협력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경찰관은 특별한 계획이나 프로그램과 같이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된 학교와의 협력 방식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무기 반입 특별 단속과 같은 특별 단속 기간에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는 형태이다.

## 마. 협력 대상 학교 수와 유형

영국에서 학교 안전 경찰관이 연계 협력하는 학교들의 수와 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경찰관과 PCSO가 한 학교 혹은 교육시설과 독점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것이다.<sup>28)</sup> 어떤 경우에는 프로젝트 참여자, 행정 공무원들이 참여한 한 개의 팀이 연계 협력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 학교에 근거지를 둔 경찰관이 몇 개의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서, 한 경찰관이 그의 활동시간 대부분을 한 학교에서 보내면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학교도 맡고 있는 형태이다.<sup>29)</sup>

둘째는,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몇 개의 학교들을 맡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서 경찰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각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활동한다. 한 그룹의 학교에서 개별 학교들은 대체로 비슷한 비율의 경찰 활동시간(자원)을 배분받는다.<sup>30)</sup>

셋째는, 경찰이 다기관 동반자관계의 일원이 되어 있는 팀에서 일하는 형태이다.

28) S. Bhabra, et al., *Safer School Partnerships: national evaluation of the Safer Schools Partnership Programme*, London: Youth Justice Board and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R. Bowles et. al., *National Evaluation of the Safer Schools Partnerships Programme*. London: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2005.

29) 이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학교들에 요일별로 시간을 할당하기도 하고, 또는 주로 중등학교에 상주하면서 다른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30) 영국 Bradford 지역에서는 6명의 학교 안전 경찰관이 지역에 있는 29개의 중등학교를 맡고 있다.  
([http://www.bradford.gov.uk/bmdc/bdp/news/news\\_archive/news\\_2009/september\\_2009/2009\\_news\\_safer\\_schools](http://www.bradford.gov.uk/bmdc/bdp/news/news_archive/news_2009/september_2009/2009_news_safer_schools))

## 바. 학교안전경찰관 근무 시간

영국의 학교 안전 경찰관은 학교에서 전일 근무(full-time) 형태로 일하기도 하고 시간제 근무(part-time) 형태로 일하기도 한다. 학교 안전 경찰관의 근무형태와 활동시간은 지역의 필요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지역에서 근무형태와 활동시간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또 각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합한 근무형태와 활동시간 할당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 사. 훈련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에 시행 초기에는 학교 안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면서 학교 경찰관을 훈련시키기 위해 몇 가지 서로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는데, 현재에는 몇 가지 형태의 비공식적인 ‘직장내 훈련’(on-the-job training) 프로그램이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사례 연구에 의하면, 학교 안전 협력팀과 경찰에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아. 재정지원

영국의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기관 협력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정 지원의 출처는 다양하다. 자선단

체를 포함해서 다수의 서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경찰의 자원이 이용되었고, 학교가 제공하는 지원은 경찰관이 학교 내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IT 기기 이용이나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도였다. 최근에는 학교와 경찰의 재정 지원이 보다 균등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서 학교 안전 경찰관은 학교와 경찰로부터 각각 50:50 비율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교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의 범죄예방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을 포함한 다른 지역단체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도 있다.

## 자. 지휘 체계

영국의 학교 안전 경찰관의 대다수는 경찰관의 공식적 지휘체계 하에 활동하고 있다. 경찰관 자신이 소속된 지역 경찰조직을 통해서이거나 모든 학교 안전 경찰관을 통괄하는 중앙조직을 통해서이든 경찰관의 공식적 지휘체계를 따르고 있다. 동시에 학교 안전 경찰관은 자신이 협력하는 학교의 책임자의 지휘 감독도 받고 있다. 학교 안전 경찰관에 대한 경찰조직과 학교 책임자의 지휘권은 서로 동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하고, 명확한 구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학교 안전 경찰관과 학교의 연결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안전 경찰관에 대한 지휘체계도 일률적이지 않다.

## IV. 미국과 영국 학교 경찰관의 역할

### 1. 미국 학교담당경찰관(SROs)의 역할과 임무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은 다양한 활동을 감당하고 있다. 그들이 맡은 임무는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지만, 가장 전형적인 역할은 법 집행자이자 안전 전문가, 문제 해결자이자 지역사회 자원 연계자, 교육자의 역할이다.

#### 가. 안전 전문가, 법 집행자

정규 경찰관으로서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SROs)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면서 학교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범죄, 무질서 문제, 갯, 약물 남용의 문제 해결
- 수사팀에 안내 및 정보 제공
- 학교 구내 무단침입자 통제
- 교내 건물 순찰, 무단결석 관리, 금속탐지기 등의 안전기구 관리,
- 학교와 경찰 사이 연계 활동, 학생과 학교 직원들에게 법 집행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
- 사건 사고 대응체계 개발

- 긴급 대응 계획 개발 및 조정
- 특수한 유형의 긴급상황 해결 프로토콜 개발

### 나. 문제상황 해결자, 지역사회 자원 연계자

학교에서 문제 해결 활동은 학교책임자, 교사, 학생,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사이에서 조정 활동을 포함한다. 학교담당경찰관은 반드시 법을 위반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과 같은 사안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은 때로 학생들을 학교 내의 상담전문가나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결시키는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특별히 학교담당경찰관은 위기청소년 관리 책임이 있는 소년사범 상담가들을 관련 서비스 기관을 연결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담당경찰관의 문제해결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포함한다.

- 학생들을 위한 범죄 방지 노력 개발 및 확대
-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사범 계획 개발 및 확대
- 범죄를 다루는 학교정책 개발 지원

### 다. 교육자

학교담당경찰관은 경찰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해서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들을 강조함으로써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한다. 학교담당경찰관이 담당하는 커리큘럼에는 흔히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한다.

- 전문 경찰활동
- 범죄 수사
- 알콜과 약물 탐지
- 일반적인 범죄 예방
- 갈등 해결
- 회복적 사법
-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범죄

학교담당경찰관의 구체적 활동은 다양하지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담당경찰관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반 이상을 법 집행 활동에 쏟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담당경찰관의 절반 이상은 주어진 시간의 1/4 정도를 쏟으면서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담당경찰관의 절반 정도는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평균 5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sup>31)</sup>

Girouard(2001)은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SROs)이 부여받고 있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법 집행자, 상담자, 범죄 예방교육 교사의 역할,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연락관(liaison offic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전국학교담당경찰관협회(NASRO)도 학교담당경찰관의 역할을 법 집행관, 카운슬러, 교사의 임무를 통합한 “triad model”을 발전시켜왔다. 이 협회에서 규정한 학교담당경찰관의 직무 내용에는 학교순찰,

31) Finn and McDevitt, *National Assessment of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s: Final Project Report*, Cambridge, Mass.: Abt Associates, 2005.

등하교 시간 교통감독, 문제 학생 통제 지원, 학부모와 전문가 모임 참석, 지역경찰관을 위한 정보 수집, 일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지역 경찰과 학부모, 학생, 학교 사이에서 연락관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Kupchik과 Bracy(2010)가 미국에서 학교담당경찰관의 실제적 임무를 참여관찰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담당경찰관은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내 순찰활동, 행정적인 경찰업무 수행, 비교적 사소한 교내 사건 조사, 학생 상담과 일탈 예방 교육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2)</sup> 교내 순찰활동은 조사대상 학교담당경찰관들의 일상적인 임무였는데, 구체적으로 교내 건물 통로를 순찰하거나, 점심시간에 식당을 살피거나, 수업을 마치고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학생들을 감독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sup>33)</sup> 학교담당경찰관들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교내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대개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업무에는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이전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거나, 학교에서 체포된 학생이 있을 때 체포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등의 행정적인 업무인데,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무시간의 절반 가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담당경찰관의 실제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학교담당경찰관들은 절도가 의심되는 사건이나,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건, 마약이나 알콜 소지 등과 같은 비교적 작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32) Kupchik and Bracy, 앞의 글, p. 24.

33) 이러한 순찰활동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하나는 학생들에게 학교담당경찰관의 존재(즉, 교내에 경찰의 공권력이 존재한다는 것)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행정책임자를 돕는 것이다.

## 2.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역할과 활동사례

### 가. 영국 학교안전경찰관의 역할

영국의 학교 안전 경찰관은 비교적 광범위한 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역할과 활동은 크게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법 집행 활동, 교육 지원 활동, 다기관 협력적 범죄예방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법 집행 활동

영국 학교 경찰관은 학교 안팎에서 법 집행자로서의 활동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 집행자로서의 활동은 학생이나 학교 교직원이 저지른 범죄행위나 범죄 피해에 대한 조사 등 경찰활동 외에도 범죄를 줄여나가기 위한 예방적 활동을 포함한다.<sup>34)</sup>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학교 경찰관의 역할이다. 학교 경찰관은 학교 복도와 범죄 취약장소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학교 구내 침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처리하며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한다. 그밖에도 학교 경찰관은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감독하고 그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처리한다.

학교 경찰관은 학생들을 훈육하고 선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34) 현재 복역 중인 채소자를 학교에 데려다가 자신의 경험을 말할 기회를 주어 학생들이 약물과 관련된 사건에 대처하는 것을 돕거나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그러한 예방적 활동의 한 형태이다.

다.<sup>35)</sup> 반사회적 행동, 학교폭력, 학대, 괴롭힘 등의 사건들에 대응하는 일은 학교 경찰관의 주요 역할이다. 더 나아가서 학교 경찰관은 무단결석하는 학생들을 찾아 나서거나 교사들이 무단결석하는 학생들을 다루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무단결석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영국의 학교 경찰관은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갈등 해소 기법의 폭넓은 활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그 활동 내용은 다양하다.

## 2) 교육 및 상담 지원 활동

영국의 학교 경찰관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복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안전과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 경찰관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긍정적 행동, 시민의식, 길거리 안전, 약물오용 등과 주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중등학교에서는 갱 문제, 칼을 사용한 범죄 등을 다루기도 한다.

영국 학교 경찰관이 수행하는 학교 내 교육활동에는 단지 학교 수업시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별교육활동도 학교 안팎에서의 경찰 활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학교 밖에서 학교 경찰관은 소방에 관한 주제로 강연활동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의 레저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참여할 수도 있다.

학교 경찰관의 상담활동은 범죄 위험이나 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

35) 학교 안전 경찰관의 필요에 따라 훈육에 참여하지만, 학교 내 학생 훈육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학교 교사들에게 있다.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개별적으로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고, 학생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대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 3) 다기관 협력적 범죄예방 활동

영국의 학교 경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여 근무지역을 순회하며 경찰관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러한 학교 경찰관의 순찰활동은 학생들, 학교 교직원, 학부모, 때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학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학교 경찰관은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에서 다기관 협력관계의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경찰관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 공공기관들과 그들이 보유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연계 협력한다. 또한 학교 경찰관은 그들이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지원한다.

학교 경찰관이 자신이 활동하는 학교와 다른 외부 기관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활동도 학교 경찰관의 역할이다. 학교 경찰관이 범죄 위험이나 범죄피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학교 경찰관은 해당 청소년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유관 기관을 찾아 연계시킬 수 있다.

## 나.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사례

### 1)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의 목표

영국의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의 성격은 이 프로그램이 얻고자 하

는 목표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 관계부처 가이드 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sup>36)</sup>

- 첫째, 학생, 교직원, 학교와 주변건물의 안전 지원
- 둘째, 범죄, 학교폭력 피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지원
- 셋째, 학생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돕고 무단결석 예방 지원
- 넷째, 청소년들과 경찰 및 지역사회의 관계개선 지원

아래 표는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학교안전경찰관의 구체적인 활동사례를 정리한 것이다.<sup>37)</sup>

<표 4> 학교안전경찰관의 활동목표와 활동사례

목표	활동 사례
학생, 교사의 안전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순찰</li> <li>○ 범죄사건 발생시 학교 지원</li> <li>○ 등하교 시간 학생 안전 지원</li> <li>○ 교내 건물 이용자와 건물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학교의 범죄예방 전략 수립 지원</li> </ul>

36)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Home Office, Youth Justice Board and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Safer School Partnerships Guidance* London: HMSO, 2009, p.6.

37) 앞의 책, pp. 11-14.

<p>범죄 위험에 처한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위험에 처한 학생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li> <li>○ 위기 청소년들의 연장교육 (extended school) 활동 연결 지원</li> <li>○ 위기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범죄를 막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 위기개입 프로그램 운용</li> <li>○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역 사회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는 정기적인 다기관 협의체 운영</li> </ul>
<p>범죄 피해 위험 청소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안전 및 범죄 관련 의식 제고 지원, 위기청소년 대상 집중 상담 및 지원</li> <li>○ 등하교길 학생 안전 문제 지원</li> <li>○ 학생들의 범죄피해 발생시 보고 방식 셋업 지원</li> </ul>
<p>학생들의 출석 및 행동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인 무단결석 단속 순찰</li> <li>○ 범죄 위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타기관과의 협력</li> <li>○ 장기 결석 아동 관리를 위한 타기관과의 협력</li> <li>○ 청소년들의 행동 개선과 갈등 해소를 위한 회복적 사법 실천</li> <li>○ 청소년들의 사회구성원 의식,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 교사와의 협력</li> </ul>

<p>청소년들과 경찰의 관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안전 경찰관의 시민교육 활동 참여</li> <li>○ 연장 교육(extended school) 프로그램에서 과외 교육활동 협력</li> </ul>
<p>학생들의 안전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 요인 처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학교주변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경찰과 학교교사들의 순찰활동</li> <li>○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권리 의식을 갖도록 학교와 협력</li> </ul>

## V.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 1. 미국 학교담당경찰관(SROs) 프로그램

미국의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는 유보적이다. 학교경찰관 제도가 학교주변 범죄 감소에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기 연구들은 범죄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후 연구들에서는 그 효과성을 단정 지우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의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학교경찰관 제도가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행위를 범죄화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가져온다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미국에서의 학교경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서 학교 주변에서의 범죄가 감소했다고 보고한다.

Crouch와 Williams(1995)는 시카고의 학교경찰 동반자 프로그램이 범죄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하였는데, 4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 결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46% 가량의 범죄 감소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8)</sup>

Johnson(1999)은 미국 남부도시에서의 학교담당경찰관(SROs)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훈육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해당 지역에 학교담당경찰관이 배치되기 전(1994-1995년)과 배치된

38) Crouch & Williams, What cities are doing to protect kids, *Educational Leadership*, 52(5), 1995, 60-62.

후(1995-1996년)를 비교한 결과, 중·고등학교에서 주요범죄 건수가 3,267건에서 2710건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9)</sup>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술한 연구들은 범죄 감소와 안전 개선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학교담당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대체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 있다기보다는 참여자들의 인식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40)</sup>

한편에서는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 제도가 청소년 범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찰관의 존재 자체로서 학교의 안전도를 제고시키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은 학생들의 싸움, 위협, 폭력 등의 공격적 행동들을 막고 학교 행정책임자들이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교내에서의 무질서한 행동들을 적절하게 처리해 주며, 학생들을 훈육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sup>41)</sup>

Kupchik와 Bracy(2010)은 참여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학교경찰관의 활동이 이 제도와 관련된 다른 주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행정책임자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있을 뿐만 아니라<sup>42)</sup>, 경찰기관

39) I. M. Johnson, School violence: The effectiveness of a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 in a southern c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7, 1999, p.189.

40) B. Raymond, Assigning Police Officers to Schools. Response Guide No. 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0, p.8.

41) M. McKay et al., An Evaluation of Cape Breton Regional Police Service's Community Liaison Officer Program in Cape Breton-Victoria Region Schools. Sydney, Nova Scotia: Children's Rights Centre, Cape Breton University. 2006.

42) 학교행정책임자들은 학교에 학교담당경찰관이 활동하고 있음으로써 외부적으로 자신의 학교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얻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학교안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학교담당경찰관의 존재를 활용하고 있었다.

과<sup>43)</sup> 학생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44)</sup>

한편, 학교경찰관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그 예로서 Schreck, Miller, Gibson(2003) 등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학교 내 금속탐지기 설치나 학교경찰관 제도 등이 Johnson(1999)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sup>45)</sup> 또한 몇몇 범죄학자들과 법률학자들은 학교안전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몇 가지 대책들, 특별히 학교담당경찰관의 수적 증가가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의 행위를 범죄화하고 학교에서의 학생 체포 건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이전까지 학교 교장과 교사들에 의해서 다루지던 훈육 문제들이 이제는 학교경찰관에 의해서 더욱 많이 다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sup>46)</sup> 그래서 학생들간의 사소한 실랑이가 폭행으로 취급되면서 단순한 일탈행위 때문에 학교에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범죄 기소 사건 건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대변하는 주장의 논지는 경찰이 학교에

---

그밖에도 학교행정책임자들은 학교담당경찰관들로부터 학교내의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조언을 받고 있었다.

43) 경찰기관의 입장에서는 학교담당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켜 학생들과 일상적인 접촉을 갖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경찰의 범집행 활동을 더욱 잘 이해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고, 경찰을 적대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담당경찰관을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 기관인 교육기관에 상주시킴으로서 경찰은 이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알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요구들을 알 수 있게 되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범죄를 탐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4)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해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질감이나 불편함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담당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안전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더라도, 자신의 학교에 학교담당경찰관이 상주해 있는 것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즉, 학생들이 학교담당경찰관의 존재로 인해 더욱 안전감을 느낀다는 사실에서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5) C. J. Schreck et al., Trouble in the school yard: A study of the risk factors of victimization at school, *Crime and Delinquency*, 49, 2003, 460-484.

46) P. J. Hirschfield, Preparing for prison? The criminalization of school discipline in the USA. *Theoretical Criminology*, 12, 2008, 79-101.

상주함으로써 실제로 학교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행위들을 범죄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sup>47)</sup>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폭력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경찰관 제도가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으며,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에서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영국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

영국의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 시행 직후인 2002년 10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영국의 고용기술부(DfES)와 소년사법위원회(YJB)의 공동계획으로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시험 평가가 이뤄졌다. 이 시험조사는 영국 전역 100여개의 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이뤄졌는데, 범죄 다발 지역 내에서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11개 학교와<sup>48)</sup>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2개 학교를 선정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이 평가는 사전-사후 조사 포맷으로 안전감, 행복감, 학교폭력, 약물 남용 등 다양한 행동 척도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 양적 자료들은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들에서는 학교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학교폭력과 약물남용을

47) Berger, R. Randall, The “worst of both worlds”: School security and the disappearing fourth amendment rights of students, *Criminal Justice Review*, 2003, 28:336-354.

48) 11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는 영국의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와 경찰서장연합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의 전액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로 선정되었다.

포함해서)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두 집단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음주, 약물 남용을 포함한 대다수의 행동 척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sup>49)</sup> 이 제도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뤄진 이 조사에서 반항적인 학생들의 행동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수 있다.

2002년의 조사를 뒤이어서 2004년에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후속 평가가 수행되었다.<sup>50)</sup> 이 조사에서는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 15개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 15개를 선정해서 비교하였는데,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들이 경찰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들에서 진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도 사전-사후 조사 포맷으로 학교폭력, 약물남용 등의 청소년 범죄와 무단결석율, 시험성적 등 교육적 척도들을 비교하였는데, 조사 연구자는 다양한 척도(특히 범죄행위 척도)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 그렇지만, 이 조사에서는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15개 학교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와 비교해서 무단결석율에서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2006년 2월,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는 영국 요크대학에 의뢰하여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또 한 차례의 평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300개의 학교와 그렇지 않은 1,000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과 무단결석율을 비교 조사하였는데, ‘학교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들에서 학업 성취 수준의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무단결석율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의 의미 있는 차

49) S. Bhabra et al., 2004, pp. 5-6.

50) R. Bowles et al., *National Evaluation of the Safer Schools Partnerships Programme*, London: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2005.

이가 나타났다. 그 밖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괴롭힘의 사례는 개선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교와 비교해서 더욱 안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51)</sup>

Briers(2003)는 영국 런던의 학교 경찰관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학생, 학교 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양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서 학교경찰관 제도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52)</sup>

Raymond(2010)는 영국의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이 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 문제의 개선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sup>53)</sup>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범죄 행위와 범죄 피해를 감소시키고, 무단결석율을 줄이고, 학교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였다는 근거들이 있다고 평가된다. Hossack(2006) 등은 학교안전협력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다기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제고시키며 청소년들과 경찰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sup>54)</sup>

영국의 학교안전협력(SSP) 프로그램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학교 안전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원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교 경찰관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전반적인 청소년 플랜의 일부일 뿐이다. 학교경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개개 학교에서만

51)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Home Office, Youth Justice Board and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Safer School Partnerships Guidance London: HMSO, 2009, p.18.

52) A. N. Briers, School-based police officers: What can the UK learn from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5,2, 2003.

53) B. Raymond, Assigning Police Officers to Schools. Response Guide No. 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0, p.9.

54) L. Hossack et al., Mainstreaming Safer School Partnerships. London: U.K.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6.

활동하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활동은 지역의 근린지역 경찰활동에 통합되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가능한 자원이 참여하고, 경찰과 지역사회 자원들간의 연계 협력이 이뤄지는 시스템 속에서 영국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VI. 맺는 말

이 연구에서는 학교경찰관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 국가로서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의 운영과 학교경찰관의 활동형태, 역할과 임무를 비교하고, 두 국가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학교경찰관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학계의 평가에서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SROs) 제도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유보적 평가가 혼재되어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반면, 영국의 ‘학교 안전 협력’(SSP)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학교 경찰관 제도의 하나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영국의 학교안전협력(SSP) 프로그램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학교 안전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원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교 경찰관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전반적인 청소년 플랜의 일부일 뿐이다. 학교경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개개 학교에서만 활동하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활동은 지역의 근린지역 경찰활동에 통합되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가능한 자원이 참여하고, 경찰과 지역사회 자원들간의 연계 협력이 이뤄지는 시스템 속에서 영국 학교경찰관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경찰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계 주체인 학교와 경찰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개입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계 협력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관련 기관들을 연결시키는 연계자이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연계 협력관계에서 연계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주체는 학교경찰관이다. 학교경찰관은 학교-경찰의 연계프로그램 상에서 학교와 경찰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자원(의료기관, 상담기관, 경찰기관, 청소년단체 등)을 연결시키는 연계자로서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미국의 학교담당경찰관(School Resource Officer)과 영국의 학교안전경찰관(Safer School Partnership Officer)들은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모두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시키는 연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2년 도입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경찰이 연계 협력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교경찰관 제도이다.<sup>55)</sup> 제도 도입 당시 경찰청에서는 교육청,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상담, 중재 활동을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로 설정했다.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과 임무로서 학교와 경찰의 연계를 강조한 것은 학교경찰관 제도의 본질에 부응하는 방향 설정이다. 학교와 연계한 경찰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55)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학교경찰관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다. 학교담당경찰관 제도와 스쿨폴리스 제도(현 배움터지킴이제도)가 그것이다. 학교담당경찰관 제도는 지난 1995년을 즈음하여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때, 교육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경찰청의 대책인데, 각 경찰서별로 수사 형사들이 최소 1개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담당하면서, 해당 학교 내의 폭력행위에 대한 단속과 학생들의 비행예방 활동을 맡게 한 것이다. 학교담당경찰관 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일부 역할은 지난 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과 형사들의 학교내 폭력행위와 관련된 정보 취득 역할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소극적인 형태의 학교-경찰 연계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05년에 지방청 단위에서 일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스쿨폴리스 제도는 전직 경찰과 전직 교원을 2인 1조로 학교에 상주시켜서 교내 폭력 예방 활동을 벌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학교담당경찰관 제도보다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학교경찰관 제도였지만, 전직 경찰관과 교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된 프로그램으로서 본격적인 학교-경찰 연계제도로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도입이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학교와 경찰의 연계 및 협력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3년 5월과 8월 서울교육청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70~80%가 학교경찰관의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 유지웅(2013b)의 연구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53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학교폭력 연계활동,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 학폭위 중재활동, 순찰활동에 관한 학교, 교사,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학교전담경찰관들의 80~90%는 학교, 교사, 학생들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두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한 학교와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은 대체로 원활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학교 폭력에 대응한 학교와 경찰의 연계 협력활동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교 및 경찰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간의 연계 및 협력관계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경찰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보완하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특별히 상담기관으로서 CYS-Net 상의 주관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지역 교육청 산하의 Wee센터와의 연계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지역사회 상담전문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들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를 지역 상담기관에 연계시키는 활동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폭력 신고센터 신고접수단계에서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학교경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 상담전문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

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시사점은 학교경찰관의 인적 구성이다.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의 인적 구성은 정규경찰관 외에 민간인 신분의 경찰직원을 포함한다. 미국 학교담당경찰관(SRO)의 경우, 시공무원 신분의 학교안전요원(Safety guard)이 정규경찰관을 보좌하여 학교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학교 안전 협력’ 팀에는 정규 경찰관 외에도 PCSO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민간인 경찰직원이다. 미국의 학교안전요원과 영국의 PCSO는 모두 정규 경찰관처럼 제복을 착용하고 활동하며 정규경찰관과 구별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지역에 따라 그 부여받은 역할의 차이를 보이지만, 정규 학교경찰관에게는 법 집행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민간인 신분의 학교경찰관에게는 그들이 갖는 신분상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지역사회 및 학교 주변 순찰 활동 등의 구별된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 인적 구성은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도 배움터지킴이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인력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두 제도간의 연계가 고려될 수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부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시킴으로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도입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제도운영의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

## <참고문헌>

- 박세정,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서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1998.
- 유지웅, “미국의 학교경찰관 프로그램과 국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 방향”, 4대 사  
회악 연구자료집 2, 치안정책연구소, 2013a.
- 유지웅,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연구”, 치안  
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3b.
- 최종술, 미국의 학교-경찰 연계제도 및 한국의 학교폭력 해결책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  
육정책 인포메이션, 제5호, 2012.
- Berger, Randall R. The “worst of both worlds”: School security and the disappearing  
fourth amendment rights of students, *Criminal Justice Review*, 2003.
- Bhabra S., Hill E. and Ghate D. Safer School Partnerships: national evaluation of the  
Safer Schools Partnership Programme, London: Youth Justice Board and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 Bowles, R., Reyes, M.G., & Pradiptyo, R. National Evaluation of the Safer Schools  
Partnerships Programme. London: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2005.
- Briers, A. N., School-based police officers: What can the UK learn from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5,2, 2003.
- Brown, Ben, Understanding and assessing school police officers: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m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006.
- Burgess, J., ‘Safer schools partnerships’, *Criminal Justice Monthly*, 63, 1, 2006, 24-39.
- Burke, Sean, The advantages of a school resource officer, *Law and Order* 49, 2001.
- Crouch, E. & Williams, D., What cities are doing to protect kids, *Educational*

- Leadership, 52(5), 1995.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Home Office, Youth Justice Board and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Safer School Partnerships Guidance London: HMSO, 2009.
- Dinkes, Rachel, Emily Forrest Cataldi, and Wendy Link-Kelly,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Office of Justice Programs, and U.S. Department of Justice, 2007.
- Finn, P., and J. McDevitt, National Assessment of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s: Final Project Report, Cambridge, Mass.: Abt Associates, 2005.
- Girouard, Cathy. School resource officer training program(FS 200105),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1.
- Herszenhorn, D.M., Students to get no warning before searches, New York Times On-Line, 2006, April 14.
- Hirschfield, P. J., Preparing for prison? The criminalization of school discipline in the USA. *Theoretical Criminology*, 12, 2008.
- Hossack, L., Hancock, P., Cotterill, B., MacNicoll, D., Lee, J. and Talbot, S., Mainstreaming Safer School Partnerships. London: U.K.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6.
- Johnson, I. M., School violence: The effectiveness of a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 in a southern c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7, 1999, p.189.
- Kupchik Aaron and Bracy Nicole L., To Protect, Serve, and Mentor?: Police Officers in Public Schools, Monahan Torin, Torres R.D.(Edited), *Schools under Surveillance: Cultures of Control in Public Educa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 Lamont E., Macleod S., Wilkin A., *Police Officers in School: A scoping study*,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2011.
- McKay, M., K. Covell, and J. McNeil. An Evaluation of Cape Breton Regional Police

Service's Community Liaison Officer Program in Cape Breton-Victoria Region Schools. Sydney, Nova Scotia: Children's Rights Centre, Cape Breton University. 2006.

Raymond, B. Assigning Police Officers to Schools. Response Guide No. 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0.

Schreck, C. J., Miller, J. M., & Gibson, C. L., Trouble in the school yard: A study of the risk factors of victimization at school, *Crime and Delinquency*, 49, 2003.

Theriot Matthew T., School resource officers and the criminalization of student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2009.

[http://content.met.police.uk/Article/Safer-Schools-Partnership/1300000261291/1300000261291?scope\\_id=1257246763584](http://content.met.police.uk/Article/Safer-Schools-Partnership/1300000261291/1300000261291?scope_id=1257246763584)

[http://www.bradford.gov.uk/bmdc/bdp/news/news\\_archive/news\\_2009/september\\_2009/2009\\_news\\_safer\\_schools](http://www.bradford.gov.uk/bmdc/bdp/news/news_archive/news_2009/september_2009/2009_news_safer_schools)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104514/A-quarter-UK-schools-police-office-r-crackdown-youth-crime.html>

<http://www.justice.gov.uk/youth-justice/prevention/safer-school-partnerships>

책임연구보고서 2013-08

## 미국과 영국의 학교경찰관 제도 비교 연구

---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